
2026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



미추홀구

1. 조사근거
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」 제3조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3조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
-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

2. 조사목적

-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미추홀구 공공기관 등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

3. 조사개요

- 조사범위 : '25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대상자('25.1.1.~'25.12.31.)
- 조사기간 : '26. 3. 23.(월) ~ 3. 27.(금) [5일]
- 조사대상 : 2개 기관
 - 지방공공기관: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
 - 기타 공직유관단체: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

※ 미추홀구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채용·정규직 전환 없음

□ 조사내용

- 각 기관에서 실시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
 - (신규채용) 대상기간 내 정규직, 계약직, 공무직, 비정규직 등 신규채용 전체
 - (정규직전환) '최초채용'과 '정규직 전환 과정'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
- 비리제보·언론의혹 등이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조사

II

조사결과

□ 처분 결과

[단위: 건]

구분	처분현황	행정상		비고
		주의	개선	
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	3	2	1	

□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

기관명	지적사항	처분요구
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	직원 등의 채용 관련 규정 준수 미흡 - 합격 최저점수의 부적정한 임의 변경 -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병역사항 확인 부적정 - 퇴직공직자 관련 서류 확인 소홀	개선·주의 요구
	단시간근로자 등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- 채용형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작성 - 서약서 징구 누락	주의 요구

□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

① 직원 등의 채용 관련 규정 준수 미흡 [개선·주의 요구]

1. 합격 최저점수의 부적정한 임의 변경

- 공단은 2025년 직원 신규채용을 계획하면서 당초 60점 이상인 일반직 전공시험과 50점 이상인 공무원직 직무능력점사 합격선을 공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두 40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나,
- 공단 인사위원회는 「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제39조에 따라 직원의 외부 포상 및 징계, 직원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을 뿐임에도 동 내규 제10조에 명시된 “전과목 60%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”이라는 직원 채용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한 사실이 있음.

2.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병역사항 확인 부적정

-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르면 징집, 소집 및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이나 군 복무 등을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·채용할 수 없으며 공단에서는 2025년 7회에 걸쳐 기간제근로자(고용직) 채용을 실시하면서 내부 계획과 공고문에 “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”를 자격요건의 하나로 일관되게 제시하면서도 병역처분일자 외에 아무런 병역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초본을 제출한 최종합격자로부터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기피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(1건).

3. 퇴직공직자 관련 서류 확인 소홀

- 공단 임원(비상임이사) 공개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에 해당하는 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면접시험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, 공단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원자로부터 면접일까지 관련 서류를 징구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(1건).

② 단시간근로자 등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[주의 요구]

- 공단에서는 2025년 총 10회의 채용공고를 통해 12명의 단시간근로자와 5명의 위촉강사를 채용하였고 「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」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를, 위촉강사는 강사위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, 서약서는 예외 없이 작성하여야 하나 단시간근로자 12명으로부터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강사위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하였고, 단시간근로자 전원 및 위촉강사 5인으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